〔일련번호 : 19〕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통장 회의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◆◆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◆◆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」 등에 따라 통장 회의참석 수당 지급 업무를 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에 따르면,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및 복지업무 등 지원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(행정안전부훈령 제307호, 2023.9.26.일부개정) 제4조 통장·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 별표4에 통장기본수당은 월30만원 이내, 상여금 연 200%,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,000원(월2회)으로 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2023년 10월 통장수당(2023.10.26.) 지급시 통장회의 1회 참석한 통장 ***(*통장)에게 40,000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통장수당을 20,000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동장은

과다지급한 통장 회의참석 수당 20,000원을 회수 처리하시고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통장 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**(시정)**